

2024. 4. 29.(월) 석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4년 4월 29일 오전 06: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자료

담당 부서: 재무국 38세금징수과

38세금징수과장

오세우

02-2133-3450

사진 없음 사진 있음 쪽수: 5

38세금총괄팀장

박희숙

02-2133-3452

서울시, 자동차세 체납 차량 30일 서울전역 합동단속·번호판 영치

- 시·구 공무원 240여 명 투입, 서울 전역에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·강제 견인
- 자동차세 체납차량 20만 5천대 · 체납액 522억원을 전체시세 체납액 6.9%
- 합동단속 앞서 4회이상 체납차량 7만 4천여대 영치예보 통보... 9일간 38억원 징수
- 소상공인·자영업자 등 생계유지 목적 차량 보유 체납자는 분납 등 방법 안내

서울시는 오는 30일(화) 시·구 세무직 공무원 240여 명을 동시 투입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(領置) 등 집중 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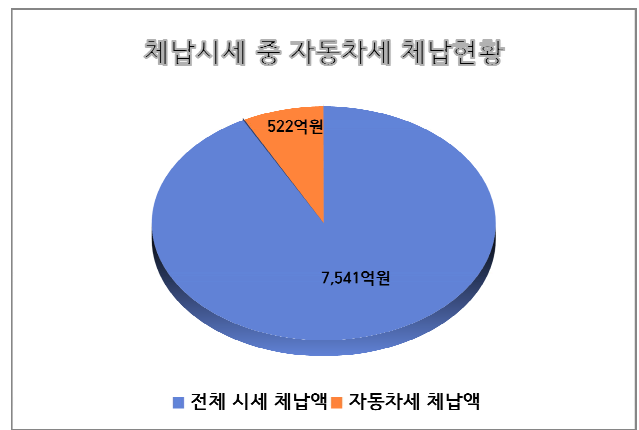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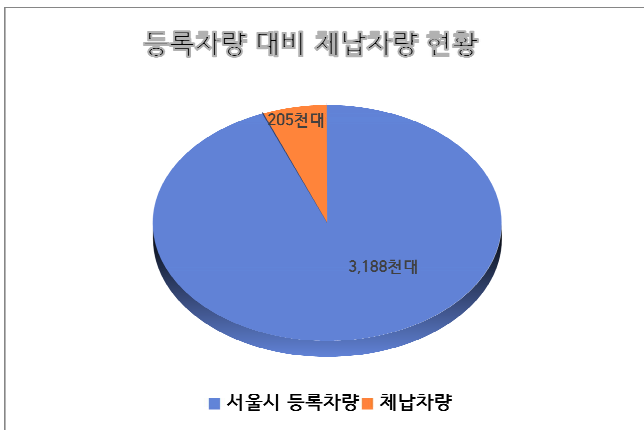
○ 자동차세는 연 2회(6월, 12월) 고지하며, 1회 체납시에는 영치예고, 2회 이상 체납시 번호판 영치, 5회 이상 체납 또는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, 영치후 방치 시에는 견인 및 공매절차에 들어간다.

지난달 말 기준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318만 8,000대로 이중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20만 5,000대(6.4%), 체납액은 522억원이었다. 이는 전체 시세(市稅) 체납액 7,541억원의 6.9%를 차지하는 것으로 세목 중 네 번째로 비중이 높다.

- 현재 서울 내 자동차세 5회 이상 상습체납자는 2만 4,470명이며 자동차 대수는 2만 4,282대다. 체납액은 238억원으로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 522억원의 45.6%에 달한다.

〈 자동차세 전체 체납현황 〉

전 체				상습체납(5회 이상)			
체납인원	차량대수	체납건수	체납액	체납인원	차량대수	체납건수	체납액
203,395명	205,483대	476건	522억	24,470명	24,282대	204건	238억



- 시는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자동차세 4회 이하 체납차량 18만 1,000여 대 중 거주불명자 등을 제외한 7만 3,501대에 영치예고안 내문 발송해 자진 납부를 권고했고, 9일간 38억원의 체납 자동차세 징수를 완료했다.
- 또한 5회 이상 체납 또는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 차량 3,368 대(체납액 1,881억원)에 대해서는 인도 명령서¹⁾를 발송, 684백만원 징수했다. 인도명령 불이행 차량에 대해선 향후 강제 견인조치·공매 등 강력한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.
- 아울러 상습·고액 체납 차량은 불법명의 이전 즉 대포 차량일 확률이 높아 강제 견인 등 강력한 단속으로 체납액을 정리한다는 방침이다.

1) 압류차량에 대하여 체납자에게 해당 차량을 인도할 것을 명하여 점유(지방세징수법 제56조 제2항)

- 다만, 물가상승, 금리 인상 등 어려운 경기상황을 고려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 생계유지 목적의 차량을 보유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등의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시는 덧붙였다.
-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“자동차세 체납은 비교적 소액인 경우가 많고 번호판 영치만으로도 세금 징수효과 크다”며 “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의 시민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”고 말했다.

붙임 1.자동차세 체납관리 개요

2.견인 징수 현장 사진

고액·상습 체납자 소유 고급 국산차량 인도명령 및 강제 견인조치

A는 고가의 고급 국산차량 G90(2021년식)을 운행하면서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및 자동차세를 21백만원을 체납한 법인으로, 자동차세를 2022년부터 현재까지 체납하고 있음. 이에 시에서 인도명령 안내를 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아 강제 견인조치 및 공매를 진행할 예정이다.

고액·상습 체납자 소유 차량을 추적으로 분납 약속

B는 고가의 고급 국산차량 G90(2019년식)을 운행하면서도 '21년 및 '22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등 474백만원을 체납한 법인으로, 법인등기부 주소지에서 압류차량을 운행하지 못하도록 잠금장치를 하자 5천만원을 현장에서 납부하고 금년 말까지 분납 및 완납할 것을 약속하였다.

C는 고급 외제차량 마세라티(2022년식)를 운행하면서도 '22년 부과된 법인지방소득세 147백만원을 체납한 법인으로, 시에서 인도명령 후 담당조사관이 납부 촉구 연락을 하자, 매월 일정 금액씩 나누어 낼 것을 약속했다. 향후 약속 불이행 시 차량을 강제 견인하여 공매할 예정이다.

붙임1 2024 자동차세 체납관리 개요

□ 개 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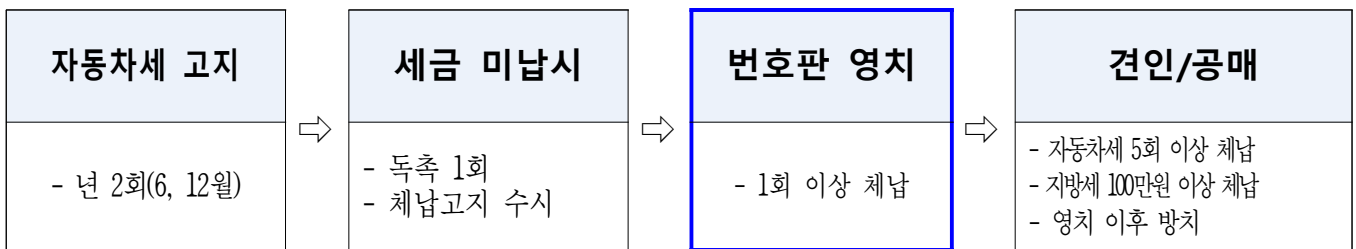
자동차세가 체납될 경우 차량 번호판을 영치(領置)하여 체납 자동차세를 납부하도록 강제하는 행정처분

□ 근거 법령

- 지방세법 제131조 (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등)
- 지방세법 시행령 제128조 (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등)

- ②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납세의무자가 독촉기간 내에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**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하여야 한다.**
- ③ 제2항에 따라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하였을 때에는 납세 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.

□ 업무 흐름도



붙임2 체납차량 견인 현장 사진

